

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병윤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450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2월 02일

발 의 자: 이병윤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
김규남, 김성준, 김영철,
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
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
김형재, 김혜영, 남창진,
민병주, 박승진, 박영한,
박환희, 서상열, 송경택,
신동원, 신복자, 유정인,
윤기섭, 이봉준, 이상욱,
이영실, 이종태, 임규호,
장태용, 최민규, 허 훈,
홍국표 의원(34명)

1. 제안이유

-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시장 등의 책무를 명시함 (안 제3조 제3항)
- 나.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 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외의 것은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 (안 제3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 및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 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,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“(시장의 책무)”를“(시장 등의 책무)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에 방해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적용범위)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② (생 략)	제3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~ ② (생 략)
<u><신 설></u>	<u>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에 방해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 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2(적용범위) 개인형 이동 장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.</u>